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위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2. 정정사유 :

- 환매대금 확정일 및 지급일 변경 (14영업일 기준가로 20영업일 지급 → 9영업일 기준가로 13영업일 지급)
-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요업무 오기정정

3. 효력발생일 : 2025.08.29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5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대금 확정일 및 지급일 변경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4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15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---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0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21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9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10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---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3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14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6 조(환매연기)	환매대금 확정일 및 지급일 변경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---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--- 이 일정한 날의 18 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19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---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--- 이 일정한 날의 11 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12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부칙(개정 2025.08.29)	업데이트	<신설>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08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

<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환매방법	환매대금 확정일 및 지급일 변경	1.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2. 17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1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	1.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9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3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2. 17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11.매입,환매,전환 기준 나. 환매	환매대금 확정일 및 지	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	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

	급일 변경	<p>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p> <p>②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1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p>	<p>를 청구한 날로부터 9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3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p> <p>②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p>
		<p>(6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--- 이 일정한 날의 18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19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(6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--- 이 일정한 날의 11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12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. 일반사무관리회사	오기 정정	<p>2) 주요업무 (1) 주요업무 - <u>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</u> - <u>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</u> - <u>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</u> - <u>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</u> - <u>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</u> - <u>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</u></p>	<p>2) 주요업무 (1) 주요업무 <u>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</u></p>
---	-------	---	--